

지난 달 9월 26일, 9회 연방순회 항소 법원은 이민자(원고) 대 이민국(피고) 케이스에서 원고 승소의 판례를 내놓았다. 항소심의 이슈는 이민법상의 Age-out으로 생기는 문제로 2002년 국회에서 제정된 아동신분보호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이민 신청 수속 중 성인이 되어 부모의 미성년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게 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고와 피고의 논쟁은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해서 현재 21세 이상이 된 자녀가 또 다른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기



**이동찬**

이민 변호사

자신과 13세의 아들을 동반가족으로 1998년 5월 이민청원서를 접수했다.

A의 이민청원서는 같은 해 6월에 승인이 되었으나 우선

이민국의 입장은 아동신분보호법에 동반자녀가 성인이 된 후 어떠한 기준으로 가족 초청의 합당한 카테고리인 이민청원서를 자동 전환하고 영주권자의 부모가 사용했던 우선순위 날짜를 쓰도록 하는 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 측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몇몇 연방순회 법원이 아동신분보호법에 대해 각각 다른 판례를 내놓은 현실이 아동신분보호법이 애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민국측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9회 연방순회 법원은 성인이 된 자녀의 이민청

## 아동신분보호법

다리는 대신 영주권자가 된 부모의 이민 청원서 수속시 받았던 우선순위 날짜를 이용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가였다.

현행 이민법상 가족초청 청원서 접수시 영주권의 혜택을 받는 자격은 혈연관계와 초청자의 신분에서 따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의 첫 번째 카테고리는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두 번째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세 번째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그리고 네 번째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이다.

항소심의 원고측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은 받았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 받지 못했고 자녀들을 위해 다시 두 번째 카테고리를 통하여 이민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예를 들어 항소심의 원고 A는 시민권자인 모친을 통해

일자를 기다린다고 2005년 11월이 될 때까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다. A는 2006년 8월에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나 A의 아들은 이미 21세를 넘긴 성인이었기 때문에 이민법상 동반자 가족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졸지에 이산가족이 되었다.

2007년 7월에 영주권자 A는 성인 아들이 A의 동반자 가족으로 취득했던 1998년 5월 우선순위 날짜를 사용하도록 이민국에 청원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A의 아들은 위에 설명한 두 번째 카테고리,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자격으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몇 년을 또 기다려야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있는 가족과 상봉할 수 있게 되었다. A는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다수의 이민자들과 함께 이민국을 상대로 동반가족 자녀들에게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하도록 주장하는 소송을 하였다.

원서의 자동 전환이 옳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단지 이민국 행정의 불편과 부담 때문에 영주권자 부모의 우선순위 날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연방순회 법원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은 그저 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이지 아동신분보호법이 불투명하다는 증거가 아니라고도 못박았다.

문제는 이 항소심의 판례가 현재 세 번째와 네 번째 카테고리의 자녀들(이제 성인이 되어버린)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아직까지 이민국이 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물론 새 판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 자신의 가족이, 자녀가 영주권 취득의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등의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